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

2025. 8. 28.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8월 14일

나. 발의자: 이규선 의원 외 7명

다. 회부일자: 2025년 8월 21일

라. 상정일자: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8.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규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는 청년 응시료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내 청년들의 자격증 시험 응시 부담을 경감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은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지원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제정 배경 및 취지

- 영등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년인구 수 6위, 청년 비율 2위로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지역임.
-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6%로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됨에 따라 영등포구의 사회·경제적 중심축인 청년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취업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짐.
- 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2024년 5월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4항에 근거하여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사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요로 인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실질적인 정책 수요가 확인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청년’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 청년 정책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의 범위를 응시료 등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경비로 명확히 함.
- 안 제4조(지원대상)는 1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규정하여, 일시적 전입 등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는 부당 신청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구청장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 규정을 두어, 지원이 시급하거나 필요성이 높은 청년이 배제되지 않도록 함.

- 안 제5조(지원내용)는 시험응시 종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
- 안 제6조(신청 및 지급)는 지원신청 및 지급 절차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행정처리 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 안 제7조(환수조치)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함.
- 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4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동 조항은 구청장이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이었음.
 - 다만,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은 별도의 독립 조례로 규정·운영하게 되었으므로, 기본조례 내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국가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의 수요 증가 및 필요성에 대응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원대상 요건 ▲신청절차 ▲환수조치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정책 운영의 체계성 및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영등포구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8
------------	-----

발의연월일: 2025. 8.

발 의 자: 이규선·전승관·최인순
차인영·임현호·우경란
이순우·정선희 의원
(8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는 청년 응시료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내 청년들의 자격증 시험 응시 부담을 경감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라. 지원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19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청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를 지원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이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경비(응시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한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
②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운전면허 시험 응시자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청년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을 삭제한다.